

임시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장소 : 비대면 회의 (Zoom회의)





2021년 임시 이 사 회 회 의 록

1. 개최일시 : 2021년 12월 17일 11:00
2. 개최장소 :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265-30(ZOOM 회의)
3. 총이사수 : 7명

이 사 장 : 조미영

이 사 : 경현옥, 박호순, 김수연, 박지숙

외부이사 : 홍혜순, 김남흥

4. 출석이사수: 6명

이 사 장 : 조미영

이 사 : 박호순, 김수연, 박지숙

외부이사 : 홍혜순, 김남흥

5. 회의안건:

1)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법인, 시설

2) 2021년도 본 예산(안) : 법인, 시설

3) 2021년도 사업방향 및 계획(안)

* 기타 안건:

1) 시설 취업규칙 변경신고 완료(신구 대표표)

2) 시설 원목 담당 봉사자(수도자)활동 건

3) 시설 직원 인센티브 지급 건

6. 개회

대표이사 조미영은 전체이사 7인중 참석이사 6인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며
이사회회 개회를 선언하다. 참석이사들의 안부 인사후 회의 안건 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함을 구하다.

7. 전차회의록처리

조미영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2021년 07월 12일)을 낭독하며 보고함.

이 사 박호순 :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함.

이 사 김남흥 : 동의함.

이 사 김수연 : 동의함

이 사 홍혜순 : 재청함.

동의와 재청이 있자 조미영대표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부를 물으니 모든
임원이 “예”로 답하다. 이에 조미영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8. 부의안 심의

제 1 호 의안 :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 법인, 시설

<법 인>			
(단위 : 천원)			
2021 1차 추경예산액(A)	2021 2차 추경예산액(B)	증감액(B-A)	
		금액	비율(%)
226,439	250,959	24,520	10.81%

[추경 사유]

▷ 세입 내역

1. 후원금 수입 증가(75.00%)

- 하나금융나눔재단 지정후원금 증가

2. 잡수입 감소(-17.19%)

- 예금 이자 감소

▷ 세출 내역

1. 사무비 감소(-63.33%)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2. 전출금 감소(-50.00%)

- 시설 공사 중단

3. 예비비 증가(62.84%)



<시 설>

(단위 : 천원)

2021 1차 추경예산액(A)	2021 2차 추경예산액(B)	증감액(B-A)	
		금액	비율(%)
2,557,216	2,558,901	1,685	0.06%

[추경 사유]

▷ 세입 내역

1. 입소비용 감소(-2.76%)
 - 입소어르신 병원 입원과 퇴소 후 공백
2. 보조금 수입증가(2.64%)
 - 방역보조인력 1명 지원(건보)
3. 요양급여수입 증가(0.03%)
4. 법인 전입금 감소(-50.00%)
 - 건물 전면 유리창 햇빛가리개 공사 취소
5. 잡수입 증가(9.44%)
 - 코로나19 검체 채취지원금(건보)

▷ 세출 내역

1. 사무비 감소(-2.97%)
 - 직원의 수술 등 무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 등 운영비 감소
2. 시설비 감소(-16.54%)
 - 유리 창문 햇빛가리개 공사 취소(시설비 감소)
 - 햇빛가리개 대신 방역압막 콤비블라인드로 설치(시설장비유지비 증가)
 - 3모터전동침대 18대 자산 취득비 증가
하나금융나눔재단 후원 3모터 전동침대 15대, 운영비 3대
3. 사업비 감소(-9.00%)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비 감소
4. 잡지출 증가 (100%)
 - 코로나19 검체채취지원금 지출



대표이사 조미영 : 법인에 관해서는 12월에 기업의 후원금 지원으로 후원금의 75.00% 증가함을 설명하고, 시설공사 중단으로 전출금이 감소(-50%)됨을 설명.

시설은 입소어르신들의 병원 입원과 퇴소후 공백으로 인한 입소비용 감소(-2.76%)와 햇빛가리개 공사 취소로 인한 법인 전입금 감소(-50.00%) 그리고 기업의 후원으로 인한 자산취득비의 증가를 추경사유로 설명함. (추경자료 별첨)

이 사 박호순 : 올해도 기업의 후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함.

이 사 김수연 : 큰 공사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건지 질문함.

이 사 박지숙 : 큰 금액의 공사보다, 작은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함.

이 사 홍혜순 : 코로나로 인해 긴장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도 최선을 다한 운영에 수고의 인사와 함께, 법인의 2차 추경과 시설의 2차 추경에 대해 동의함.

이 사 김남홍 : 추경에 대해 재청함.

이 사 김 수연 : 동의함. (참석이사 전원 동의하다.)

대표이사 조미영 : 이사님들 전원의 동의로 제1호 의안인 법인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설의 2차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2 호 의안 : 2021년 법인 및 시설 본예산(안) 승인 건

<법 인>		(단 위 : 천 원)	
2021 2차 추경예산액(A)	2022 본 예산액(B)	증감액(B-A)	
		금액	비율(%)
250,959	238,239	-12,720	-5.06%

[예산 개요]

▷ 세입

- 후원금 수입 감소(-38.65%)
 - 지정후원금 감소 예상
- 이월금 증가(5.50%)
 -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감소

▷ 세출

- 사무비 증가(36.04%)
 - 대면회의 예상
- 법인 전출금 증가(100.00%)
- 예비비 감소(-32.55%)



<시 설>

(단위 : 천원)

2021 2차 추경예산액(A)	2022 본 예산액(B)	증감액(B-A)	
		금액	비율(%)
2,558,901	2,575,793	16,892	0.66%

[예산 개요]

▷ 세입 내역

1. 입소비용 증가(2.84%)
 - 2022 요양급여수가 4.10% 인상
2. 보조금 수입 감소(-4.96%)
 - 방역보조인력 1명 감소(건보지원)
 - 시군구 처우개선비 감소(정년직원 증가)
3. 요양급여 수입증가(0.97%)
 - 장기요양 수가 인상(4.10%)
4. 전입금(법인) 증가(100%)
5. 잡수입 감소(-20.38%)
 - 코로나19 검체채취지원금 감소
 - 일자리 안정자금 중단예상

▷ 세출 내역

1. 사무비 증가(6.99%)
 -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 전기요금 인상
2. 시설비 감소(-14.41%)
 - 자산취득비 감소
3. 사업비 증가(5.88%)
 - 어르신 기저귀, 의료소모품, 마스크 등 운영비 증가
 - 프로그램비 사업비 증가
4. 잡지출 감소(-84.61%)
 - 코로나19 검체채취 지원금 감소



대표이사 조미영 : 법인과 시설의 2022년 본예산(안)을 설명하고 승인을 구함. 법인은 지정후 원금의 감소와 사무비 증가(36.04%), 전출금의 증가(100.00%)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시설은 장기요양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입소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이 소폭 증가하였고, 법인전입금의 증가(100.00%)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무비(6.99%)와 사업비(5.88%), 프로그램사업비가 증가하였음을 설명함.(예산자료 별첨)

이 사 김수연 : 코로나19로 인해 예상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해 운영이 힘들겠다고 말함.

이 사 박호순 : 2022년 법인과 시설 본 예산안에 대해 동의함.

이 사 박지숙 : 동의함.

이 사 김남홍 : 동의함.

이 사 홍혜순 : 재청함.

대표이사 조미영 : 참석 이사님들 전원의 동의로 제2호 의안인 2022년 법인과 시설의 본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Ⅲ. 2022년도 사업방향 및 계획(안)

1. 퍼슨 센터드케어를 실천을 통해 정착해가기.(Yes, we do! : 별첨1)

-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어르신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과 실천
- 어르신 변화에 따른 사례 관리 통한 질 높은 케어
- 어르신 신체특성에 맞는 전문적 재활치료의 계획 및 접근
- 직원들의 부서별 전문성 위한 교육

2. 어르신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환경 만들기

-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 멈추어 듣고, 미소로 답하기
- 밝은 목소리로 먼저 인사하기

3.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기
- 감염병 예방위한 주기적 교육과 실천
- 면역력 높이기(영양, 운동, 일광욕, 즐겁게 지내기)

4.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

- 시설 내의 설립된 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현장 적용
- 모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한 인권지킴이로써 깨어있기
- 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5. 공동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환경감수성 높이기

- 각 부서별 실천방안 정하고 지키기
- 실천 방안 : 별첨2

대표이사 조미영 : 2022년도 시설 사업방향 및 계획에 관해 설명함. 특히 내년에는 어르신 중심의 케어와 존중의 케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강조하고, 인권 감수성과 환경감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함과 평안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함.

이 사 박호순 : 코로나로부터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시설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



을 표현하고, 그럼에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감수성에 깨어 있고
자 고민하는 모습이 좋다고 말하며 동의함.

이 사 김수연: 코로나19로 인한 대응과 위생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고 말함.

이 사 홍혜순: 내년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엄
수한다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격려함.

이 사 박지숙: 2022년도 사업 방향 및 계획(안)에 대해 동의함

이 사 김남홍: 내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더욱 수고 많겠다고 격려하며 동의함.

대표이사 조미영: 이사님들 전원의 동의로 제3호 의안인 2022년도 사업방향 및 계획(안)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 기타 안건

1) 취업규칙 변경신고 완료

변경 후 (개정 2021. 01. 01.)	현행 (변경 전)	개정 사유
제22조의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시설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필수기재 사항으로 신설
제30조(유급휴일) ① 시설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 가능 2. 근로자의 날(5월1일) -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제30조(유급휴일) ① 시설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법 개정 에 따라 제1항 3 호 추가 신설 및



변경 후 (개정 2021. 01. 01.)	현행 (변경 전)	개정 사유
통해 보상휴가 부여 가능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 -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 가능 4. 기타 시설에서 별도로 정하는 휴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시설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3. 기타 시설에서 별도로 정하는 휴일 ②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한다. ③ 시설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근로자의 날 제외)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문구수정
제47조(정년퇴직)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시설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의거하여 정년에 도달한 자가 시설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1년 이상 재고용한다. 시설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계약을 제외하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제47조(정년퇴직) ① ~ ② 생략 ③ 시설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와 촉탁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항 문구수정
제3조(시행일)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이 규칙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3조(시행일) ① ~ ⑤ 생략	개 정 에 따른 제6항 추가 신설

대표이사 조미영 : 취업규칙이 직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 설명함.

2) 시설 원목 봉사 수도자 활동 건

대표이사 조미영 : 누군가와 이야기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침실 방문하여 말씀을 들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는 수도자가 필요한 시설임을 설명함.

3) 시설 직원인센티브 지급 건

대표이사 조미영 : 코로나로부터 어르신들 지켜내기 위해 수고한 직원들 격려차 소정이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

이 사 김남홍 :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니 직원들을 사랑하는 원장님의 마음을 직원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사 홍혜순 : 시설 원목 봉사 수도자 활동 건에 대해서는 기대가 큼니다.

이 사 김수연 : 3가지 기타 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大清宣統

이 사 박호순 : 재청함

대표이사 조미영 : 이사님들 전원의 동의로 3건의 기타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위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21년 12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썬뜰원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265-30

참석자: 대표이사 조미영 (인)

이 사 김수연 (인)

이 사 박호순 (인)

이 사 박지숙 (인)

외부이사 홍혜순 (인)

외부이사 김남흥 (인)

배 석: 사무국장 현 미 정

사회복지법인 썬뜰원

